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6. 21.(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효재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세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19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 현 상임위원
 - 속기록과 관련성이 있어서 접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지난번에 14일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방송법 시행령 텔레비전 수신료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상정을 했습니다. 이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령 제·개정 절차를 밟을 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첨부해서 상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용산 비서실에서 한 달여 가까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은 통상 행정청에서 진행하는 데 반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권고안을 받아서 2개의 행정부처가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권고안은 국민의 권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한다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신설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역으로 KBS 종사자들이 볼 때는 강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하루 만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 내용이 누락된 채 보고가 상정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입법예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가 없었는데 추후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법제처장에게 방통위 사무처가 제출한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에 보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다라고 분류했습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의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통합징수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분리징수를 했을 때 역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2가지가 다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흘 동안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더욱더 예고 기간을 길게 해서 용산 비서실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판단 없이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규제를 개선할 때 이것이 규제다, 아니라는 사무처의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제도가 개선될 때는 100만명 이상, 100억원 이상 국민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개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채 '신속한 국민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참여토론을 왜 한 달가량 했으며,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KBS 관계자의 의견진술이 생략된 채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 보고가 상정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비규제 대상이라고 단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보고가 필요할 것이고, 입법예고를 열흘 동안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제도개선을 열흘 동안 과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지도 더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열흘로 정한 배경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표결이 2 대 1이기 때문에 열흘 동안 입법예고가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28일로 예정된 위원회 의결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만 충분한 논

의가 가능하고, 국민 상당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징수방법과 이 중요한 개선방안을 단 순히 비규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공문 역시도 상당한 내용상 문 제가 있다, 자기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적하신 것이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지적하고 사무처에게 이 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 주 수요일 의결 일정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의 의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과 속기록에는 이의 없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보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20-049)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가> “(주)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단말기유통조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2페이지입니다. (주)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LGU+가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서비스'(이하 '디즈니+ 무료서비스')의 가입유치와 관련하여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내려 보내, 일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토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사배경입니다. LGU+가 휴대폰 가입 이용자에게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22년 2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LGU+,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다음 '23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LGU+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사대상은 LGU+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기간인 '21년 10월 23일부터 12월 16일 기간 중 가입절차, 가입유치 영업정책, 민원내용 등을 분석하였으며, 세부 현장조사는 해당기간 중 가입유치건수가 많은 10개 대리점, 14개 판매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 절차입니다. 먼저 이용자가 LGU+의 휴대폰 가입 시 디즈니+ 서비스가 가입을 신청하면 LGU+는 이용자에게 문자로 접속 URL을 보내줍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이용자가 수신된 문자의 URL을 통해 디즈니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하면 이루어지고 디즈니+ 서비스를 3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디즈니+ 무료 서비스는 가입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디즈니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와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조사 대상기간 중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자 현황입니다. 5페이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가입자 약 62만명 중 약 22만명이 가입 신청하였으며, 이 중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이용 가입자는 휴대폰 가입자의 약 13%인 약 83,0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 무료서비스 영업정책과 관련하여 LGU+의 영업정책, 휴대폰 대리점의 정책, 그다음에 판매점의 영업방식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LGU+가 소속 대리점의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즈니+ 무료서비스 100% 가입유치 정책을 시달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부 대리점의 판매점에 대한 영업정책 중 디즈니+ 서비스 미유치시 개통 불가, 불합리한 차감정책인 예를 들어 유치 시에는 5,500원을 주고 미유치시에는 10,000원 또는 50,000원 등을 차감하는 정책을 시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LGU+ 고객센터를 통해 '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디즈니+ 무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약 13,000여건 중 무작위로 116개의 녹취록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휴대폰 가입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

는 민원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판매점 현장조사에서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자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신청을 중용하여 1~2시간 정도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일부 진술이 있었으나 실제 개통이 지연된 사례는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인 이동전화 서비스 개통 불가·지연 여부와 관련해서 실제 휴대폰 개통 거부사례가 없는 점, 그다음 가입자 유치를 위해 1~2시간 지연사례가 있었다는 일부 현장 진술이 있었으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가입의사 확인없는 디즈니+ 무료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 11페이지 계약서 중요사항 고지 여부, 12페이지 계약서 송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결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13페이지입니다. LGU+ 일부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 시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시행하여 이로 인한 휴대폰 개통 불가 등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가입토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LGU+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으로 LGU+는 소속 대리점이 부가서비스 미가입을 이유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과 15페이지입니다. 권고사항으로 LGU+는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경우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절차를 명확히 안내할 것입니다. 피심인 의견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언론 보도가 처음 된 것이 2021년 11월 19일이고, 사실조사가 2022년 2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됐고, 결국 금년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의견조회가 된 뒤에 안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처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 박동표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 조사는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규정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는데 마무리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 도중에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두 번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조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이번 조사에서 LGU+의 휴대폰 서비스 개통 거부·지연 및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나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LGU+가 과도한 가입유치 정책을 내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일부 대리점의 개통불가나 불합리한 차감 등을 통해서 판매점에 무료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민원사례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통사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한 마케팅이나 정책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업무처리 절차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사무처의 시정조치 원안에 동의하고, 향후 LGU+는 업무처리 절차 시정명령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박동표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알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지적대로 조사는 1년 만에 마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너무 지체된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업무지침을 준수해서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 업무처리가 너무 느리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알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23-20-050)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2조에 따라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3>번 관련 경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 2023년도 평가계획입니다. <가> 평가 목적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예방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불편 해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나> 평가 대상 기간은 '22년 1월~12월까지 1년입니다. 대상 사업자 개요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 43개 서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22년도 42개사에서 1개 사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를 이용자 규모와 운영 서비스, 이용자 인식 등을 고려하여 3개사를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자 세부 현황입니다. 기간통신은 가입자 수, 민원현황 기준으로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총 21개사입니다. 대상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통신은 월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22개사입니다. SNS 분야에서 인스타그램이 신규로 선정되어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앱마켓, 검색, OTT·개인방송 분야 모두 전년과 평가대상이 동일합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쇼핑·배달 분야와 모빌리티·중고거래 모두 전년도 평가 대상과 동일합니다. 3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는 앞서 개요에서 보고드린 대로 3개사를 신규로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세부 선정기준은 국민 대부분인 국민의 80% 약 4,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의 검색·SNS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계정으로 여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 이용자에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식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포함하게 됩니다. 예로 카카오톡 SNS 계정으로 검색서비스 다음(DAUM)과 법인은 다르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으로 통합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평가대상은 <표>를 보시면 현재 검색·SNS·쇼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검색·SNS·모빌리티 평가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검색·OTT·앱마켓 평가를 받고 있는 구글 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최고 책임자의 면담,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 확인 등 현장평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RS 시스템과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에 평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서비스 분야별 평가와 디지털플랫폼 평가를 일정 기간 동안 병행한 이후, 기존 개별 서비스 평가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범평가는 기존과 같이 신규 사업자의 평가업무 이해와 신규 분야 평가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년간 운영하고 결과는 비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범평가 대상은 전년도에 최초로 시범평가를 시행한 4개사와 이번 평가에 신규로 포함되는 인스타그램과 디지털플랫폼 3개사가 해당됩니다. <라>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등 5개 분야를 평가하고 평가 세부 지표와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항목은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과 평가 관련 내·외부 의견 그리고 최근 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기간통신은 통신 장애 예방 및 대응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통신요금 경감을 위한 마일리지와 포인트 이용 활성화 노력과 결합상품 허위 광고 모니터링 결과 준수 여부를 새롭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통신 분야는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등과 관련된 통신장애 예방과 대응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노력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부가통신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앱마켓, SNS 등 세부 분야별 개선사항은 박스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 아래 디지털 플랫폼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과 이용자 및 이용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기존 9개 부가서비스 분야별 개별 평가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및 이용사업자 보호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디지털플랫폼 주요 평가지표로는 디지털플랫폼 전체를 통합해서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여부와 그 편의성,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안정성 강화 조치, 이용사업자 보호 정책과 피해발생 시 구제 절차, 검색추천 주요 기준 안내 및 이용사업자의 상생과 사회적 공헌 노력 등 사회적 책무 관련 사항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번 평가절차 개선과 <바>번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 평가결과 활용입니다. 평가결과는 각 사업자별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항목별 등급 또는 점수의 공개 여부는 평가결과 의결 시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과 같이 본 평가 이전에 시범평가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비공개하고 개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서 우수사업자에 대해 표창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업무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사업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연말에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예, 맞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얼마나 걸리는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새로운 법령이 아니고,

○ 김 현 상임위원

- 시행령.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국정과제에 기반해서 예년보다 1~2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대략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6개월입니까?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1~2개월 정도 예년보다 준비하는데 소요됐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 전부터는요? 이것 전체 얼마나 소요됐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앞으로 진행하는 평가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그 이전부터.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작년 연말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기존 12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했고, 그리고 보고 드린 대로 디지털플랫폼의 평가항목인 대상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설계하는 부분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면 1~2개월 준비기간을 사업자에게 줘서 평가자료를 받고 평가위원회를 한 2~3개월 운영해서 작년에 비해서 늦지 않은 일정에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통상 절차인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맞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이용자정책국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자 보호 정책은 엄격한 사후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교육이나 평가를 통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그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꾸준히 개선해 왔고,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 대상 사업자도 확대해 왔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과 컨설팅도 시행하는 등 평가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평가 계획 역시 현실에 맞춘 평가항목과 절차를 조정하고 신규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개선된 계획(안)이 잘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처에서는 향후에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자들도 이번 평가를 통해 이용자 보호업무를 스스로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 제출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추가로 질문과 확인을 요하는 것인데 이용자정책국과 관련이 없는 것이긴 합니다. 사무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협의과정도 그렇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논의와 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정책국뿐만 아니라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통상 소요시간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2020년부터 제5기 방통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시행령이 어느 정도 소요시간을 가지고 법령개정을 했는지 종합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동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까지 구성·운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어느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이 건은 시행령 개정안이 아니고...

○ 김 현 상임위원

- 시행령 개정 건이 아니지만, 제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기준 개정과 관련해서 쪽 진행된 것을 듣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건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우리가 평가를 몇 년째 하고 있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2013년부터 해서 올해로 10년째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결국 평가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그 평가결과를 보고 업체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제도도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일이니까 이번에도 정확하게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알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마련에 관한 사항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안건 가>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1> 보고 사유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 준수 유도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2>경과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안내서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앱 마켓사업자가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 OTT, 음원 등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앱마켓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예방을 위해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약관의 변경사항을 공지하며, 이용자 불만처리와 결제방식 제공 관련된 사항들을 조치 유형과 최근 사례 위주로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내서의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결제·환불 관련 사항 중에 아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정보,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 처리방법과 둘째,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 불만처리 및 결과 통지 관련은 결제·해지·환불 등에 대해서 이용자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하고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해지 등 안내 관련은 결제 전에 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설명과 최근 사례를 안내서에 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 세부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앱마켓사업자와 주요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대상으로 모니터링 절차와 항목,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서에 담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안내서 배포와 사업자 설명회 개최와 함께 국민이 모바일 앱결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고 '앱결제안심터'에 새로 신고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여기 보면 의견수렴을 하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서 신고창구를 개설합니다. 방통위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리고 이것을 점검하고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으로 진행되는데 대략 하반기 언제까지 진행되니까? 대략 몇 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되니까?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예, 모니터링하고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연내에 드릴 계획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은 대략 다른 경우에서도 안내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변경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아니면 사업자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앞서 논의했던 평가업무처럼 교육과 홍보정책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자율규제 정책 방향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3월 관련 법령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항이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가 제작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개최할 설명회에서 안내서 내용 등을 충실히 홍보해 주시고, 향후 사업자들의 준수 여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직접 설명회도 하고 SNS와 홈페이지에도 다 올리는 것이지요?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나. 스마트폰 선택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안건 나> “스마트폰 선택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 이유입니다. 스마트폰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선택재하고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 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스마트폰 선택재 앱의 삭제 제한은 단말기의 메모리 용량 제한과 데이터 배터리 소진 등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앱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앱을 설치·운영해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개요입니다. '22년 출시된 주요 단말기에 대해서 선택재 앱의 삭제 제한 및 다른 앱의 설치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10개 기종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단말기 이외에 전용 단말기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녀의 유해 콘텐츠 노출 예방 등을 위해서 어린이 전용 단말기, 소위 키즈폰의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서 통신 3사의 키즈폰 선택재 앱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단말기 내 선택재앱 점검 결과입니다. 선택재 앱 현황은 단말기 10개 평균 81.8개 앱을 선택재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재앱제공자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55.6개, 애플 38개, SKT 26개, LGU+ 20.5개, KT 20개, 구글 17.5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KT·LGU+의 경우 전년 대비 3~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결과 삭제가 제한되는 앱은 단말기 10종 평균 32.8개로, 삭제 제한 앱 중 기 점검한 앱을 제외하고, '22년 신규로 추가된 삭제 제한 앱의 필수성과 삭제 제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최종 점검 대상 3개 앱 모두 삼성전자가 선택제한 것으로, 첫 번째 Windows와 연결 서비스 앱은 삼성 갤럭시 폰과 윈도우 PC 기기 간 연동 기능을 제공해서 PC에서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문자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앱입니다. 두 번째, Samsung Galaxy Friends는 스마트폰에 특정 액세서리(케이스) 등을 착용하면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이 해당 테마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앱입니다. 세 번째, 보안 Wi-Fi는 공공 Wi-Fi 연결할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삭제제한 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입니다. Windows와 연결 서비스 앱은 스마트폰과 PC를 연동시켜 단말기가 없어도 PC에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앱으로 판단되고, 삭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해서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동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삭제제한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Samsung Galaxy Friends는 특정 스마트폰 케이스에 커버 등을 장착할 경우, NFC를 통해 자동 설치되는 앱이므로 선택재 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앱 설치 후에 삭제가 제한되지만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특정 디자인 테마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특정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삭제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스마트폰 앱 선택재 금지행위 판단을 위해 마련된 안내서 준수사항 중 부당성 판단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삭제제한이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안 Wi-Fi는 기존 삼성전자 단말기에서는 해당 앱을 앱마켓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들도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필수앱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 단말기 내 선택재 앱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키즈폰 3종의 선택재 앱은 평균 65.7개로 일반 단말기보다 적은 약 7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재앱제공자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구글, SKT, KT, LGU+ 순으로 선택재되어 있었습니다. 단말기 3종의 삭제 제한 앱은 평균 30.3개로 대부분의 삭제제한 앱이 일반 단말기와 동일하여 키즈폰에 특화되어 탑재된 4개 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 앱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제한 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입니다. 위의 4개 앱 모두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앱이 선택재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 특성을 고려할 때 삭제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조치 방안입니다. 점검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삼성전자 1개 앱에 대해서 먼저 전년 대비 선택재 앱과 삭제제한 앱 전반이 감소한 점, 행정지도에 따른 삭제조치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시정한 기존 사례, 기술 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19년 입법 당시 대비 선택재 앱과 관련한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순차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서 기존과 같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토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내용을 접수해 주

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안 Wi-Fi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행정지도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맞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난 1년 사이에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제가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사무처에게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여전히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위원장이 보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오고간 공문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지 못한 채 위원회에 보고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남용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관련 사무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오고간 서류 공문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권리를 개선시키는 제도개선이라고 용산 비서실의 권고안에 나와 있고, 통합정수와 분리정수의 경우 6,000억과 2,000억에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정수비용도 어떤 경우는 600억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반드시 거쳐서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생략한 채 진행된다면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잡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EBS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2 대 1이라는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이 부분도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의견진술을 의안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지금 회의운영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개인이 의안 상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국에는 회의소집은 기관장인 위원장이나 위원 2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회의 소집할 것이냐의 여부는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위원 한 분이 의안을 상정하자고 의안 상정 요구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에게 결재를 올려주십시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또 하나 첨언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말씀하십시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저에게 결재를 올려 주십시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다만, 아까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안이라고 해서 저도 의안이라고 했는데 의견진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진술의 여부는 회의운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긴급,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당사자 의견진술과

○ 김 현 상임위원

- 국장님, 평가하지 마시고,

○ 배중섭 기획조정관

- 해당국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니까 의안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가 결정할 테니까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 배중섭 기획조정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사무처에서 이번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방식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비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 시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행정규제기본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행정기관 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오고 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도 심의·의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 내용을 검토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 특별부담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본 위원은 검토 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규제가 제도개선이라고 한 만큼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충실하게 검토돼서 진행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계속 제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몇 번씩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쪽 모아 보시지요. 모아서 담당과가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장 재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회 위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의·의결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당연히 사무처는 각각의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공받아야겠다는 위원에게는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장 결재 아닙니다. 지금 사무처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담당 국장과 과장이 이 위원회의 성격인 합의제기구를 자꾸 독립제기구와 혼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보시고 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대행께서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1분 폐회 】